



김해시복지재단

##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-(주)비아이컴퍼니 업 무 협 약 서

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)과 (주)비아이컴퍼니는 상호 발전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장애인 아·미용 서비스 제공 및 업무연계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.

### 제 1조 (목적)

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인적·물적·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진행 또는 상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조 (기본원칙)

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상대기관의 제반규정을 존중한다.

### 제 3조 (합의사항)

1.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업무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2. 양 기관 간 공동협의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는 양 기관 간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위반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### 제 4조 (협약범위)

양 기관은 제 1조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지원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.

1. 복지관은 서부지역 장애인들의 활기찬 생활 영위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(주)비아이컴퍼니와 적극 교류·협력한다.
2. 복지관은 교류·협력분야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및 효과 제고를 위해 공동홍보 진행 및 정보 교환에 상호 협력한다.



## 김해시복지재단

3. (주)비아이컴퍼니는 복지관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·미용 서비스 제공, 공동홍보 진행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교류·협력한다.
4. (주)비아이컴퍼니는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복지관 직원 및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한다.

### 제 5조 (기타사항)

1. 본 업무협약은 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(주)비아이컴퍼니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협력할 것을 전제로 한다.
2. 본 업무협약서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은 별도 협의 하여 정하기로 한다.
3. 본 업무협약의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제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.

### 제 6조 (협약해지)

양 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를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본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 및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은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업무협약이 유효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서명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1. 12. 20.



(재)김해시복지재단

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

관 장 조 재 판



(주)비아이컴퍼니



박준뷰티랩 경남그룹 본사

대 표 이 사 이재철